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7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서지영・이헌승・서천호

윤상현 • 박충권 • 김소희

정성국 · 김용태 · 김승수

곽규택 • 이종배 • 박수민

나경원 · 최은석 · 이인선

신동욱ㆍ이철규 의원

(17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·도경찰 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금액이 1조 450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,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.5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체납된 과태료등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 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으로 써 체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). 법률 제 호

##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제164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 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나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전면허 갱신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8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7조(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	제87조(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		
기 적성검사) ① · ② (생	기 적성검사) ① ・ ②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	③		
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			
받을 수 없다.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3.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		
	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		
	아니한 사람. 다만, 제164조제		
	1항·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		
	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		
	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	
	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		
	우나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		
	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		
	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		
	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